

원자력손해배상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 정책적 검토

이대성, 원병출, 정환삼, 윤성원, 송숙자, 김대형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dslee@kaeri.re.kr

1. 서론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와 그로 인한 원전사고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수준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구축이라는 협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은 1960년대부터 원전사고의 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위기와 체르노빌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협약¹⁾을 체결하여 상호 타국 손해의 배상과 일원화되고 신속한 배상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왔으며, IAEA 주관하의 비엔나협약²⁾을 통해 IAEA는 범세계적인 원자력손해배상 협약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IAEA와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이하 CSC)의 한국 가입과 관련한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2.1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CSC)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통상 원자력시설이외의 제3자, 즉 시민과 재산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배상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자력손해의 제3자 배상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각 원자력 이용국들은 자국의 입법절차를 걸쳐 법률을 운영 중이지만 파리협약과 비엔나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의 기본원칙을 많이 수용하였다. 대표적인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으로는 책임의 집중원칙, 엄격책임주의, 유한책임주의를 들 수 있다. 책임의 집중원칙은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 그 원자력사고발생 시설의 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원자력공급자나 건설자, 하청업체들은 원자력사고발생 시 특별히 사고 발생의 고의가 없다면 책임을 면

책 받게 된다. 일반적인 책임원칙에서 보면 다소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원자력시설 운영자가 독점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그 원자력시설 운영자는 민간 보험을 통해 그 위험을 대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는 재정 및 담보력이 유한한 민영보험시장의 한정된 자원을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집중시켜줌으로써 원활한 원자력산업과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엄격책임주의는 원자력시설운영자의 원자력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심대한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고발생의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이다. 이 엄격책임주의를 통해서 원전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둘러싼 소송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제3자의 고의가 없는 한 엄격하게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이다.

유한책임주의는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시키고 엄격책임주의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지만, 그 책임의 한도는 유한하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도출된 원칙이다. 따라서 그 책임의 한도는 경제발전과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지만 유한하게 유지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CSC는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의 위 원칙들을 수용하면서 CSC 협약 제III조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국이 사고발생시 자국 의 책임한도인 3억SDR (약 5400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시에는 타 협약체약국들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과 유엔분담금비율을 각각 90%, 10%의 가중치로 계산한 공공기금을 사고발생 체결국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CSC협약체약국들은 사고발생시 공공기금의 각출을 통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협약체약국들간의 공공기금을 통한 실제적인 피해배상을 위한 금액의 증대효과에도 불구하고 CSC는 발효요건인 5개국의 협약비준과 가입국의 최소 40만 단위(0.4MWth)의 설비용량을 달성하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1)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2)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CSC는 2008년 미국의 협약가입이후에는 미국 주도로 협약의 발효를 위한 탄력을 받고 있다.

2.2 한국의 CSC가입을 위한 법적, 정책적 쟁점

미국은 CSC협약가입이후 우방국인 한국의 CSC가입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CSC가입에 대한 법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위에서 언급한 원자력시설운영자의 책임 집중의 원칙, 엄격책임원칙, 유한책임원칙 등 CSC의 주요개념에 부합되는 법제를 유지함에도 CSC가입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정책적 쟁점이 현존하고 있다.

-쟁점1. 원자력사업자의 3억 SDR 보험유지의무

CSC 조항 III에 따르면 체약국정부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또는 재정적 담보최소액으로 3억 SDR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 법에서 명목적으로 3억SDR의 원자력시설사업자의 담보액을 정하고는 있으나, 보험이나 재정장치로서 그 액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으로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경우 200억 원을 보험담보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CSC의 가입을 위해서는 원자력시설사업자의 보험담보액을 3억SDR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과중케 할 우려가 있다. 보험담보 유지비용의 급격한 증액이 수반될 경우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2 체약국으로서의 공공기금 부담의무

CSC 체약국의 사고발생시 자국의 최소 3억 SDR 피해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IAEA와 CSC 체약국들에게 공공기금을 요청할 권리와 공공기금 납부의무가 협약 제III조와 제IV조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공공기금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그 각출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바, 한국의 가입 시 IAEA 공공기금 산식에 따르면 대략 310억 원(약 \$2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공여하여야 한다.³⁾

국내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협약의무에 따라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수출자가 미국정부의 공공기금 부담부분을 CSC협약의 수익자로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단일 원전 수출자 구조인 한국의 경우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국내사고로 인한 공공기금 각출은 국내 원자력시설 운영자가 부담하

는 방식에 대한 협의와 검토 역시 필요하다.

-쟁점3 주변국의 가입동향과 CSC의 실효성

동아시아 주변국의 CSC 협약가입이 없는 상황에서의 한국의 단독가입은 그 협약의 실효적인 의미가 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중국과 일본이 CSC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가입만으로는 우선 협약 자체가 발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주변국이나 우리의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도 CSC협약에 따른 신속한 사고처리와 협약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비체약국에게 CSC의 원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CSC체약 국가가 아니라면 CSC 조항 XIII의 재판관할권, 즉 사고발생국가의 법원의 원자력피해에 관한 판결을 체약국이 존중하고 따르는 원칙을 주변국에게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금을 비체약국에 대한 피해배상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위와 같이 CSC의 가입을 위한 한국의 법적, 정책적 쟁점에 대한 국내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변국으로서의 일본과 중국과의 CSC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에도 각 국가의 입장차이로 인해 공동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결론

지난 2011년 2월 24일에 CSC에 대한 국제워크숍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미국, 일본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들 간의 CSC가입에 대한 의견이 교류되었다. 그 협의과정에서 일본 역시 우리가 갖는 쟁점들에 대한 내부조율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정부는 아직 완전한 형태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SC의 범세계적 출범과 동아시아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이해당사자들 및 주변국과의 위 쟁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1] 함철훈, 원자력법제론, 법영사, 2009.2.
- [2] 박기갑,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1999.10.
- [3]코리안리, 원자력보험의 이해, 2007.7

3) <http://ola.iaea.org/CSCND/Calculate.asp> 참조